

# 단국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운영내규

1984. 3  
1988. 11  
1993. 9  
1999. 3  
2005. 3  
2005. 9  
2011. 5  
2018. 1  
2019. 9  
2023. 9

기 계 공 학 과

## 제1조 목적

학과의 특성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효과적이고 능률적인 학과 운영을 도모하는 데 있다.

## 제2조 적용범위와 효력

본 내규는 일반대학원 기계공학과 석·박사과정 및 통합학위과정에 적용되며,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의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생한다.

## 제3조 학점이수

- ① 석·박사과정은 공히 지도교수가 지정하는 전공과목으로 전 취득학점의 1/2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하위 학위를 기계공학과와 상이한 학과에서 취득한 자나 특수 대학원 졸업자는 추가로 보충과목을 수강하여야 한다.
- ③ 추가 보충과목을 포함하여 한 학기당 시간제 학생인 경우 9학점, 전일제 학생인 경우 12학점을 초과 이수할 수 없다.

## 제4조 외국어시험

- ① 외국어시험의 면제조건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 ② 내국인의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영어만 시행한다.
- ③ 외국인의 외국어시험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모두 영어와 한국어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하며 영어는 모국어가 영어가 아닌 외국인 학생만 선택 가능하다.

## 제5조 종합학력시험

- ① 종합학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은 석사학위 과정은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18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 박사학위 과정은 재학 중인 자로서 전공과목 27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 석·박 통합과정은 전공과목 45학점 이상을 취득(연구지도 학점 제외)한 자로 한다.
- ② 종합학력시험은 필기시험과 구두시험으로 시행된다.
- ③ 필기시험의 응시과목은 세미나, 산학프로젝트, 인턴쉽 교과 및 주임교수가 지정하는 교과를 제외한 전임교원의 과목 중 석사과정인 경우 2개 과목(학과공통 1개, 전공심화 1개), 박사과정인 경우 4개 과목(학과공통 1개 이상, 전공심화 2개 이상)으로 한다. 단, 지도교수의 과목을 2개 이상 선택할 수 없으며, 특별한 경우 주임교수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
- ④ 필기시험의 경우 각 과목당 1명의 교수가 출제 및 채점을 주관한다.
- ⑤ 구두시험은 과목별로 2명의 교수가 공동 출제 및 채점을 진행한다.
- ⑥ 종합학력시험의 합격점수는 80점 이상으로 한다.
- ⑦ 석·박사 과정 모두 국제학술대회 논문상을 수상한 경우 종합학력시험을 면제한다.

## 제6조 논문계획서 발표

- ① 석사과정은 재학 3학기 초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단, 연계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3학기에 석사학위 청구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학 2학기 초에 논문계획서를 발

표하여야 한다.

- ② 박사과정은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 합격 후 적어도 박사학위 청구 논문심사가 시행되는 학기의 한 학기 이전에 논문계획서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③ 논문계획서 발표는 학과의 전 교수와 대학원생 참여하에 공개로 시행한다.

### 제7조 박사학위 연구실적 심사

- ① 박사학위 청구 논문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연구실적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연구실적에 포함되는 논문은 박사학위 과정 중에 발표된 것에 한하며 박사학위 청구 논문과 동일한 분야라야 한다.
- ③ 연구실적은 주저자로 SCIE(SCI 포함) 논문 1편 이상으로 한다.
- ④ 실적심사에 제출된 모든 논문은 저자에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⑤ 동일 논문으로 1회에 한하여 연구 실적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적심사로 제출하는 논문에 본 대학원에 재학 중인 다른 주저자가 포함된 경우에는 사용 포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⑥ 실적심사 시 게재가 확정된 논문은 게재증명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게재 예정인 논문은 학위 논문심사 만료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⑦ 박사학위 청구 논문은 심사일 7일 전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⑧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학위논문 심사요청 1주일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1. 제3항의 논문 또는 논문 관련 증빙자료
  2. 종합학력시험 합격 확인자료
  3. 외국어시험 합격 확인자료 또는 면제 증빙자료

### 제8조 석사학위 논문심사

- ① 전국규모 이상의 학술대회에서 실제 발표자로 연구결과를 1회 이상 발표하여야만 석사학위 청구 논문심사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단, 연계과정으로 입학하여 재학 3학기에 석사학위 청구 논문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을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학술지에 주저자로서 1편 이상 게재하여야 한다.
- ② 연구결과는 석사학위 과정 중에 수행된 것에 한하며 석사학위 청구 논문과 동일한 분야이어야 한다.
- ③ 학술대회초록 및 학술논문의 저자에는 지도교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석사학위 청구 논문은 심사일 7일 전까지 주임교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학위논문 심사요청 1주일 전에 주임교수에게 제출한다.
  1. 제1항의 연구결과 발표 또는 게재에 대한 증빙자료
  2. 종합학력시험 합격 확인자료
  3. 외국어시험 합격 확인자료 또는 면제 증빙자료

### 제9조 지도교수 위촉

지도교수 위촉 희망자는 지도 받기를 원하는 교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마감일 전에 논문지도교수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외부 교수를 지도교수로 희망할 경우는 학과 교수 회의의 동의를 얻어 위촉할 수 있다.

